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*1024*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 
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9월 2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병역명문가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제8호)
  -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(참조 : 보건위생과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(무학동), 문의전화 : 02-3396-6312, FAX : 02-3396-8880, E-mail : js9981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- 붙임 : 1.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서울특별시 중구 역명문가 병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

제3조제3항의 “제2항의제8호”를 “제2항제9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7. (생략)</p> <p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8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</p> <p>③ <b>제2항의제8호</b>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.</p>	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<b>8. 「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</b></p> <p><b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b></p> <p>③ <b>제2항제9호</b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